

CBWF 이슈페이퍼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발행일 | 2021. 08. 31

발행인 | 박혜경

홈페이지 | www.cbwf.re.kr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의 협력방안

한민경 | 경찰대학교 교수

목차

1. 연구배경 : 자치경찰제 시행
2.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용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의 연계
4. 과제 및 제언

1. 연구배경 : 자치경찰제 시행

-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 추진되어 온 것임¹⁾. 아울러,

1) 경찰청 브리핑,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 다짐, 2021년 7월 1일자(<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706>,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대된 경찰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의 의의도 갖고 있음²⁾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사무 배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의 업무는 국가경찰사무(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셋으로 구분됨. 국가경찰사무는 보안·외사 등 정책 업무, 수사경찰사무는 형사·수사,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순찰·교통·여성청소년 분야 등 민생 분야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수사,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등이 포함됨³⁾
-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교차]**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면 시행에 임박한 시점에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도가 있는가 하면,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았음. 지휘·감독이 분산되는 복잡성과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대상 폭력범죄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 범죄에 대한 수사나 피해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 **[자치경찰과 협력하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할 모색]**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치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전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긴요함.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추진사업 관련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맡고 있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음⁴⁾. 이에 자치경찰과 협력하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법무부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2018년 6월 21일자(<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88>,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 제2호

4)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전국 96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음(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운영,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2.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용

- **[충북 자치경찰사무 규정 근거 : 조례]** 자치경찰 세부사무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함⁵⁾.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2021년 5월 20일 제정 및 시행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565호)에 따름

- 이 중 생활안전 관련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동 조례 제2조 제1항 관련)는 [표 1]과 같음

- **[생활안전 분야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특징]** 생활안전 관련 대다수의 충북 자치경찰사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필수적임. 1)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운영 및 나) 범죄예방진단에 있어 지역주민이 범죄두려움 내지 불안감을 느끼는 위치를 자치경찰에 알리고 자치경찰은 이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 기대되고 있음

[표 1] 생활안전 관련 충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 운영	① 범죄취약지역환경 개선 등 지역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 · 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 · 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 · 관리	① 시기별 · 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 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 ·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 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 · 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 관리	① 지역주민대상범죄예방요령 · 범죄예방교실 · 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아동 · 청소년 · 노인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 · 학교 · 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 노인 ·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 · 홍보 등) ②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사안대응(가 · 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 지원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 · 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 · 유괴 경보 체계 구축 · 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 · 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제2항 및 제3항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4) 아동·청소년·노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 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 배치 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 교육 홍보 ③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 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 피해학생, 학교 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 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 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 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기관 등 연계 지원 ④ 가정폭력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 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 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 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 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위반행위 지도· 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 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사범의 지도 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 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단속 업무

자료 :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 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97231>,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비고 : 자치경찰사무 중 3)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및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관련 내용은 생략함

- 2)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등과의 협업, 지원 지도는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 먼저 전개되고 있을 때에야 가능하며, 2) 나)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 범죄예방교실 시민경찰학교 등 홍보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치경찰사무임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 학교 성폭력 등의 예방은 생활안전 분야 자치경찰사무 중 가장 범위가 넓으면서 상시적인 시민참여가 요청되는 부분임. 생활안전 분야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라)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과 같은 전문가로서의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다) 아동 대상 범죄, 마) 가정폭력, 바) 학교폭력, 사) 성폭력 예방활동 참여까지를 포괄함. 5) 가)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나) ③ 성매매 예방역시 예방활동을 전개할 대상이자 예방활동의 내용을 수용할 지역주민을 상정하고 있음
- 자치경찰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함께 부여되어 있음. 이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아우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임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의 연계

-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및 시민참여단 운영현황]** 2021년 1월 기준 충북 내 여성친화도시는 6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으로, 충북 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음⁶⁾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들 시·군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3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시·군별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체적인 명칭은 상이하나([표 2] 참조), 역할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 ▶ 그 밖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등으로 대동소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 **[생활안전 분야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현황]**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불법촬영장비 점검(충주시·음성군), 안심 귀갓길 로고라이트 모니터링(제천시), 성·가족·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증평군) 등의 활동들에 참여해 왔음([표 3] 및 [그림 1] 참조)

6) 2021년 초 청주시가 3단계 지정신청에서 탈락하고 진천군과 괴산군이 신규로 지정된 데 따름(이현주,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 현황 및 육성방안, CBWF 이슈페이퍼 2021/1호, 1쪽). 한편, 청주시는 2021년 1월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 2021년 1월 28일자,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09>,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중 안전감을 증대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들 활동은 일부 시·군의 경우 경찰과의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표 4] 참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경찰사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표 2]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현황(2021.8. 기준)

시·군	명칭	최근 구성연월	임기	인원 (명)	분과 구성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20.7.(3기)	2년	35	가족친화, 안전증진, 여성참여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21.6.(3기)	2년	32	분과 없이 3개 팀으로 운영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2021.6.(3기)	2년	30	분과 없이 3개 팀으로 운영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019.9.(2기)	2년	31	가족친화·돌봄, 안전·도시공간, 일자리·참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020.2.(1기)	2년	30	역량강화, 안전, 취업·일자리, 돌봄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2019.12.(1기)	2년	28	소통문화, 기획홍보, 생태돌봄, 안전환경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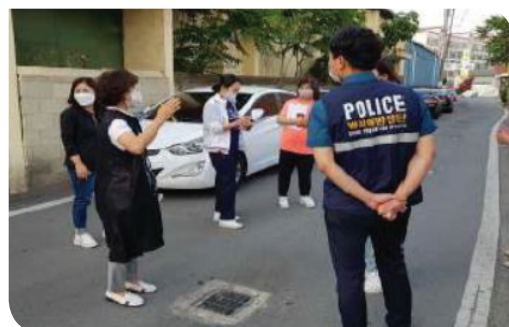
[표 3] 생활안전 관련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사례(2019년)

시·군	활동사례 내용
청주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충주시	시설물 공간모니터링, 불법촬영장비 점검 등
제천시	아동친화 정책개발, 안심 귀갓길 로고라이트 모니터링 등
증평군	노후시설 개선 사업, 성·가족·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음성군	불법촬영장비 점검, 개인별 모니터링 제안 등

자료 : 이현주·유지영·정아림·김선미·송민이, 2020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충북여성재단 연구보고서, [표 II-5] 2019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사례 발표내용, 25쪽



성희롱, 성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불법촬영기기 점검



여성안심귀갓길 합동점검

자료 : 이현주 · 유지영 · 정아림 · 김선미 · 송민이, 2020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충북여성재단 연구보고서, 72, 73, 75, 76쪽

[그림 1] 생활안전 관련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사례(2019년)

[표 4] 생활안전 관련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현황(2019년)

시·군	사업추진 현황
청주시	- 민 · 관 · 경이 함께하는 여성안심귀갓길 모니터링 중점 운영할 계획 -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30여 곳 모니터링 예정
증평군	- 주민참여단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거리 만들기 사업추진 예정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함 관내 공중화장실 안전점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
음성군	LED안심시설, 여성 안심길 조성, 편의점과 연계한 '안심지킴이집', 주민참여형 긴급구조 시스템 '생활안심리더' 등 진행 예정

자료 : 이현주 · 유지영 · 정아림 · 김선미 · 송민이, 2020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충북여성재단 연구보고서, [표 III-5] 각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현황, 34쪽; 재구성

4. 과제 및 제언

-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욕구와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추진 방향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속 및 고도화하는 것으로 요약됨. 자치경찰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의 활동을 감시 및 견제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설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함

1) 지역사회 참여 정도 심화

-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는 1) 인식조사 참여, 2) 위원회 위촉, 3) 반대집단의 포함, 4) 일회적 캠페인 전개, 5) 장기적 풀뿌리 활동(grassroots activism)의 5단계로 정리할 수 있음⁷⁾. 단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함
- 1) 인식조사 참여란 지역주민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인터뷰 · 설문조사 등에 응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2) 위원회 위촉은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 3) 반대집단의 포함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반대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내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가리킴
 - 쓰레기 줍기 운동과 같은 4) 일회적 캠페인 전개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을 내어 지역사회를 순찰하는 거리 감시(street watch)는 5) 장기적인 풀뿌리 활동에 해당함
- [그림 1]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등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전개해 온 활동은 대부분 일회적이거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4) 일회적 캠페인 전개에 그침
- 시 · 군청 내 여성가족과 등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나 자치경찰의 협조요청 없이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스스로 제안 · 발굴 · 실행하고, 이러한 활동이 상당 기간 지속될 때 5) 장기적 풀뿌리 활동에 준하는 심화된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이러한 장기적 풀뿌리 활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일상생활 중 안전감 증대에 관심을 갖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음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향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또는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개별화 · 분권화된 방식으로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함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맥락에 따르면, 민주시민의 의무로서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는 자경(自警)의 역할이 강조됨
 -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경찰활동 파트너십과 구분됨. 경찰활동 파트너십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경비를 절감하고 기능의 효율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찰 우선논리(police priority)를 반영함. 즉, 경찰활동 파트너십의 맥락에서는 활동의 주도권이 경찰 등 정부기관에 있으며, 시민은 경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거나 경찰이 주도하는 활동을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머무르고(top down) 법질서 중심의 범죄통제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남

7) Sandercock, L., Towards Cosmopolis: Planning for Multicultural Cities. Chichester, UK: John Wiley and Sons, 1998.

8) Cox, Steven M. & Fitzgerald, Jack D. Police In Community Relations, William C. Brown, 1992.

-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해당 정책추진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3) 활동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 그간 생활안전 관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시군청 여성가족과 등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나 경찰이 합동순찰, 캠페인 전개 등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제안하고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진행됨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반드시 한 장소에 단원들이 집합하는 물리적인 것일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활동에는 자치경찰의 활동을 견제하는 시민감시(citizen oversight)가 결여됨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등 생활안전 전반에 걸친 광범한 업무가 자치경찰에 부여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이러한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함으로써 자치경찰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함
- 자치경찰의 업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으로 통계연보 등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공식통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자치경찰 시행을 맞아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통계 역시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공표할 것으로 전망됨. 지역주민들이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자치경찰사무 관련 관련 통계 작성 및 공표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시계열에 따른 추이를 살펴봄으로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정도를 지역주민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충북도청에서 매년 작성, 발표하고 있는 충북통계연보에 따르면([표 5] 참조), 여성폭력 상담건수는 2014년 21,638건에서 2019년 47,806건으로 6년간 2배 이상 급증함. 여성폭력 상담건수 증가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건수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데, 2019년 통합상담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가정폭력 상담건수 증가추이를 누적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게 되었음
 - 최근 충북 내 가정폭력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은 무엇인지, 가정폭력 상담은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시·도 통계연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통합상담 항목이 추가된 이유는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여성폭력 관련 정책추진 상황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표 5] 충북통계연보(2019년 기준)상 여성폭력상담 관련 통계

(단위 : 개소, 건)

	여성폭력상담									
	합계		통합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상담소수	상담건수	상담소수	상담건수	상담소수	상담건수	상담소수	상담건수	상담소수	상담건수
2014	17	21,638	-	-	8	9,120	8	11,512	1	1,006
2015	18	26,492	-	-	8	15,638	9	10,116	1	738
2016	17	36,601	-	-	8	21,839	8	3,089	1	1,673
2017	16	36,906	-	-	7	22,507	8	12,752	1	1,647
2018	16	40,183	-	-	7	25,626	8	12,657	1	1,900
2019	18	47,806	3	22,470	5	8,858	9	14,634	1	1,844

자료 : 제60회 충북통계연보(2019년 기준, 작성일: 2021년 3월 31일), 28. 여성폭력상담,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ttView.do?key=1407&bbsNo=182&nttNo=173317>,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 또 다른 예로, 피해자지원내역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표 6] 참조), 심리·정서적 지원건수는 2018년 14,035건에서 2019년 5,133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사·법적 지원건수는 2018년 1,504건에서 2019년 5,674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 충북 내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건수가 크게 감소한 배경은 무엇인지, 수사·법적 지원 제공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활용, 정보공개청구 등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창구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해당 부서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 현황 설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6] 충북통계연보(2019년 기준)상 피해자지원 관련 통계

	피해자지원내역					
	합계	심리·정서적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기타
2014	21,638	5,252	4,381	1,629	234	10,142
2015	26,459	10,179	1,810	1,728	139	12,603
2016	31,452	8,510	5,938	4,045	1,361	11,598
2017	30,410	8,959	1,458	1,488	118	18,387
2018	32,345	14,035	1,504	1,795	1,257	13,754
2019	32,211	5,133	5,674	1,227	1,220	18,957

자료 : 제60회 충북통계연보(2019년 기준, 작성일: 2021년 3월 31일), 28. 여성폭력상담, <https://www.chungbuk.go.kr/stat/selectBbsNttView.do?key=1407&bbsNo=182&nttNo=173317>, 2021년 8월 10일 최종접속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고도화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 및 연령층의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함. 2020년 말 기준 충북 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중 10~20대는 시·군별로 3명 이하/10% 미만에 그쳤으며, 10~20대 참여가 한 명도 없는 시·군도 있음⁹⁾
 -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안전에의 욕구는 성별과 연령대를 교차하여 살펴보았을 때 10~2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남¹⁰⁾.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높은 연령대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자치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짐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조직하고 지역안전에 집중하는 분과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시민참여단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는 주제(예컨대, 여성참여)와 지역안전·일자리 등과 같이 특화된 주제를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성/젠더와 관련된 이슈가 점차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부합함

2021년 6월 21일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포럼 발표문을 수정·보완 및 재구성함

9) 이현주,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 현황 및 육성방안, CBWF 이슈페이퍼 2021/1호, 3쪽.

10) 김민영·한민경·박희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